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94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통영세무서에서 일반통합조사를 받고, 2018. 10. 26. 2013년도~2017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84,880,367원과 부가가치세 96,469,254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였다.

나.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2. 1. 2013년도부터 2018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외 13건 281,349,560원이 고지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386,852,7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B은 2018. 10. 11. 자신의 모(母)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통영세무서에서 2019.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영세무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영세무서 소속 조세채권의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 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사해행위

(1) 위 증거에 더하여 갑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총 230,000,000원(경남 거제시 C 소재 아파트 시가 1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8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431,349,560원(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원 +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 채권 281,349,56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배우자이자 B의 부(父)인 D 소유인 거제시 E 및 F(이하 'D 소유 토지'라 한다)와 인접하여 피고가 마당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B이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한다고 하자 피고가 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B이 2012. 7. 24. 매수한 토지로, 위 토지는 D 소유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8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8.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바로 전날인 2018. 10. 10.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위 거제도 C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및 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8. 12. 10. 기준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해진 양도대금 8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000,000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차액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금진